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592
----------	-----

2020. 12. 18.(금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박상돈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20년 11월 20일

다. 회부일자 : 2020년 11월 23일

라. 상정일자 : 2020년 12월 8일

－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의결

마. 주요내용

－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박상돈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지방소멸 시대에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확대를 장려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청사부설 주차장 주차료에 임산부 및 다자녀 가구의 주차료 감면을 추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의 주차료 감면 조항 신설(안 제5조제3항제2호 다목 및 라목)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남범우)

- 이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임산부와 다자녀가구에게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임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5조 주차요금 감면조항에,
 - 제3항제2호 다목에서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내용을,
 - 제3항제2호 라목에서는 아이사랑보너스카드 소지자 또는 충청북도에 주소지를 둔 3자녀이상 다자녀가정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마련하는 것임.
- 이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의 인구증가 및 출산확대 장려 정책에 부합하고, 임산부 배려와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의안번호	제 592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박상돈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0년 11월 20일

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박상돈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92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0년 11월 20일

발 의 자 : 박상돈, 임영은, 이옥규,
심기보, 오영탁, 육미선,
허창원

1. 개정이유

- 지방소멸 시대에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확대를 장려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청사부설 주차장 주차료에 임신부 및 다자녀 가구의 주차료 감면을 추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임신부 및 다자녀가구의 주차료 감면 조항 신설(안 제5조제3항제2호 다목 및 라목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- 나. 관련부서 협의 : 행정국 총무과와 협의함.
- 다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- 라. 입법예고 : 2020. 11. 13. ~ 2020. 11. 18.

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제2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다. 「모자보건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로서 병원
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는
경우
- 라. 「아이사랑보너스카드」 소지자 또는 충청북도에 주소지를 둔 3자녀
이상 다자녀가정이 소유한 차량으로서 증명서류(주민등록등본, 건
강보험카드)를 제시하는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주차요금의 감면) ①·② (생 략)</p> <p>③ (생 략)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: 50퍼센트 감면</p> <p>가.·나. (생 략)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④ (생 략)</p>	<p>제5조(주차요금의 감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: 50퍼센트 감면</p> <p>가.·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다. 「모자보건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로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</p> <p>라. 「아이사랑보너스카드」 소지자 또는 충청북도에 주소지를 둔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소유한 차량으로서 증명서류(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카드)를 제시하는 경우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제4항 제1호

○ 사 유

-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